
'26년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업무 수행계획

2026. 2.

**금 융 위 원 회
금융정보분석원**

I. 추진 배경	1
II. 추진전략 및 과제	4
1. 중대 민생범죄 및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	5
2.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	9
3.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	12
4. 글로벌 정합성 개선	14
III. 향후 계획	16

I. 추진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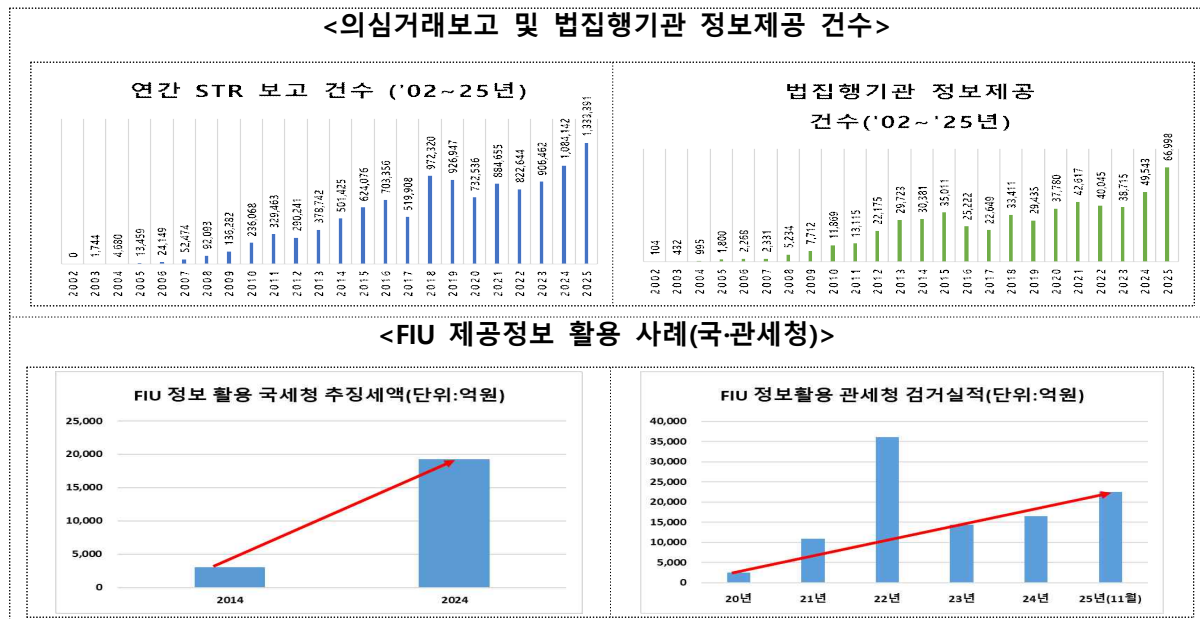
1 그간의 성과

- 금융정보분석원은 '01년 설립 이후, 특정금융정보 분석·제공,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리·감독 등의 업무를 독립 수행

* '01년 「특정금융정보법」(이하 “특금법”)을 제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(FIU) 설치, 자금세탁방지(AML) 관련 관리·감독, 의심거래보고 분석 및 법집행기관 제공 등을 규정

- 그간 AML 제도 운영으로 의심거래보고(STR)·분석정보 제공이 급증하였으며, 법집행기관의 체납세액 추징 등 정보활용에서도 큰 성과

* STR 건수 : ('03) 1,744건 → ('25) 약 130만건 / '24년 국세청 추가 추징세액 약 2조원



- '21년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* 및 AML 의무 부과 등 가상자산사업자 감독·검사업무도 수행 중

* 현재 국내 사업자는 거래소 19개(원화마켓 5, 코인마켓 14), 보관업자 8개로 총 27개

- 가상자산사업자 현장검사·제재* 등을 통해 사업자 AML 역량 강화

* '24~'25년 두나무 등 5개 원화마켓 현장검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검사 후속조치 실시 중 ('25.11월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)

- '21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트래블룰(송·수신인 정보제공의무)*을 법제화하여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

*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시 송신거래소는 수신거래소에 정보제공의무

2 자금세탁 리스크 현황

- '25년 국가위협평가* 실시 결과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금세탁에 대한 취약점 및 위험 요인이 상당수 존재

*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관련 위험요인·취약점 분석 → AML 제도개선 필요사항 제시

- 국민 피해를 발생시키는 **민생침해 범죄들**(조세포탈, 마약* 등)이 고위험 자금세탁 전제범죄로서 지속적으로 확산

* **(조세포탈)** 전통적으로 자금세탁과 매우 긴밀히 연관된 범죄로, 집행 1건당 추정액이 3억 7,300만원(전제범죄 중 가장 높은 액수)

* **(마약)** SNS 등 온라인 마약시장에 학생·주부 연루 등 새로운 고위험범죄로 부상(전제범죄 중 추정건수가 연평균 1만건으로 가장 많음)

→ 디지털화·글로벌화(초국가성)로 **신종 범죄수법**이 지속 발전하고, 다양한 수단이 복합 활용되어 기존 AML 체계상 취약점 존재

< ※ 신종 범죄수법 사례 : 조세포탈·마약 >

- ❶ (조세포탈) 해외 중고차의약품 수입업체가 수입대금을 제3자에게 가상자산으로 이전하고, 제3자는 이를 국내 수출업체에 반복적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**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매출누락(법인세 탈루)**
- ❷ (마약) 불법 가상자산거래소가 마약류 판매상들의 의뢰(텔레그램)를 받아 마약류 매수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고, 수수료(16~20%)를 받는 방식 등으로 수익을 얻음

- 현금,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 위험도가 가장 높은 거래수단이 국민 일상에서 **활발하게 활용**되는 상황

- 현금은 고령층의 대면 거래 주요 지급수단으로 활용*되고 있으며, '20년 이후 고액현금거래(1,000만원 이상)도 연 2천만건 전후로 유지

* 한국의 현금거래 비중은 10%로 평균(23%)보다 낮은 편(Worldpay('23))이나, 최근 1개월 간 대면거래 시 현금 이용 경험률은 88%로 지급수단 중 가장 높음(한은('24))

- 디지털 활용 금융거래 증가, 가상자산 시장 확대 등으로 **가상자산 거래*** 및 **관련 범죄도 급증**하여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

* 가상자산사업자 STR(전체 STR 대비 비율) : ('24) 19,658건(1.81%) → ('25) 62,055건(4.65%)

→ 거래 흐름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는 거래수단의 확대 및 지속 활용은 자금세탁의 큰 위험 요인으로서 작용

⇒ **신종 자금세탁 범죄 관련 대응역량 증진,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제도개선, 금융업권 AML 역량 강화 등 리스크 관리 필요**

3 한계 및 개선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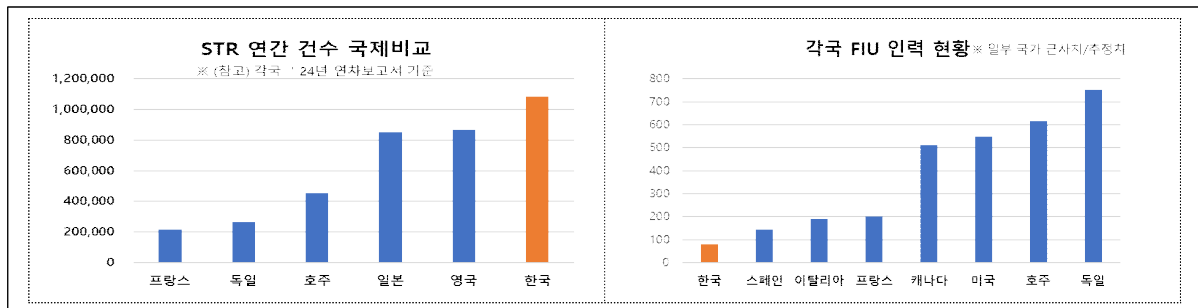
□ 국내외적으로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, FIU의 역할 강화 필요성도 증가하였으나 현행 시스템으로는 한계점 존재

① AML 제도 도입 후 25년이 지남에 따라 새롭게 다양한 유형의 자금세탁 전제범죄에 대응할 효과적 정책수단이 부족한 상황

- ▶ 금융거래의 편의성 증가 등으로 범죄자금 은닉 속도가 가속화되었으나, 수사 도중 범죄자금을 동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측면
- ▶ 가상자산시장 확대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도 증가하고 있으나, 현 체계상 거래 흐름 파악에 한계

② 타 국가 대비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많으나 심사분석시스템 노후화, FIU 조직 규모* 등 인프라 측면에서 제도의 확장 운영에 애로

* △FATF 제4차 상호평가에서 우리나라 우선 개선과제로 FIU 내 상시인력 증원 필요성 지적, △유사한 경제규모 및 FIU 조직형태를 가진 호주는 9배의 인력으로 운용



□ 최근 초국가범죄·가상자산 자금세탁 증가 등이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여 FIU 기능 확대 및 AML 제도 개편이 시급한 상황

- 신속하고 효과적인 자금세탁 대응과 이를 통한 범죄수익 동결·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전면 제도개편 필요
- 자금세탁 리스크의 1차적 대응 주체인 금융업권의 AML 역량을 강화하여 자금세탁방지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성 대두
- FATF 제5차 상호평가 수검이 도래(28.3월)함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는 AML 제도 보완을 통해 글로벌 정합성 제고가 필요한 시기

⇒ '26년에는 새로운 국내외 환경 및 제도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AML 제도에 대한 전면 개선을 추진할 계획

II. 추진전략 및 과제

추진 목표	AML 제도 선진화를 통해 자금세탁으로부터 안전한 선진 국가로 도약
----------	--



추진 전략	① 25년만의 특금법 전면 개정	② 자금세탁방지 인프라 확충	③ AML 분야 국제적 위상 제고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주요과제	세부 추진과제	기대효과
1. 중대 민생범죄 ·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	(1)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(2)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국제 범죄조직 포함 (3) 심사분석 기능 강화 (4) 국제공조 강화	· 선제적 범죄 대응을 통한 국민 피해 예방
2.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	(1)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강화(트래블룰 정비 등) (2) 스테이블코인 관련 AML 제도정비 (3) 가상자산사업자 경영개선 유도 및 엄정 제재	·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의 투명성 제고
3.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	(1) 금융회사등의 AML 책무구조 정비 (2) AML 제도이행평가 법제화 (3) AML 검사 · 제재 개선	·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도록 AML 안전망 강화
4. 글로벌 정합성 개선	(1) 법인 실소유자 정보 확인체계 구축 (2) 특정비금융사업자 AML 의무 도입 (3) 상호평가 대비 정부합동대응단 구성 · 운영	· 국제기준에 맞는 선진적 AML 시스템 구축

1 중대 민생범죄 및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

(1)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

- (현황) 범죄수익과 관련있다고 의심되는 계좌라도 일부 예외*를 제외하고는 법원 결정없이 계좌 동결이 불가능

*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보이스피싱·자본시장 불공정거래

- 마약, 도박 등 민생침해범죄 확대에 따라 범죄자금흐름 조기 차단 및 물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계좌정지 제도의 필요성 대두

※ FATF(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)는 각국에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을 권고('23.10월)

- (개선방안) 수사기관 요청 등에 따른 범죄의심계좌에 대해 FIU가 계좌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계좌동결 근거 마련

- (대상범죄) 계좌정지 대상 범죄를 마약, 도박, 테러자금조달 행위 등 특정 중대 민생침해범죄로 한정

- (결정근거) 도입 초기에는 수사기관 요청 계좌로 한정하고, 제도 도입 이후 FIU 자체분석 의심계좌로 단계적으로 확대*

* 도입 이후 계좌정지 사례 축적 및 FIU 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

- (권익보호) 재산권 등 권익 침해 최소화를 위해 계좌정지 결정 근거·절차·요건을 엄격히 설정하고, 이의제기 절차 등 마련

<계좌정지 관련 제도 비교>

	대상 계좌	계좌정지 결정·조치
①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(테러자금금지법)	테러·핵확산 관련자의 모든 계좌	금융위가 지정·고시
② 보이스피싱 (통신사기피해환급법)	보이스피싱 의심계좌	금융회사가 결정·조치
③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(자본시장법, '25.4.23일 시행)	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의심계좌	금융위가 결정, 금융회사에 요청
④ (②-③)외의 범죄 (범죄수익은닉규제법)	수사기관 수사, 법원 (기소전/기소후) 몰수추징정보전명령 절차를 거쳐 계좌 지급정지 → 행정기관 단계에서 지급정지 불가	
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안(특금법 개정필요)	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	FIU가 결정, 금융회사에 요청

※ 해외 사례

- ▶ (영국) 전제범죄를 한정하지 않으며, 금융기관이 계좌정지가 필요한 의심거래를 확인한 경우 임시적으로 계좌를 정지시킬 의무 → 계좌정지 확정 FIU가 판단

[2]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국제 범죄조직 포함

- (현황) 현재는 '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*' 지정 대상이 테러·핵확산
관련자로 제한(테러자금금지법)

* 금융거래·재산권(금전·채권·동산·부동산 등) 처분 시 금융위 사전허가 필요, 금융
회사 및 그 종사자는 허가가 없을 경우 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업무 취급 금지

- 초국가범죄 등의 증가로 국제 범죄조직 등에 대한 금융거래
제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, 직접적인 제재 근거가 없는 상황

※ 캄보디아 범죄조직(프린스그룹 관련자들)의 경우 '공중협박' 관련 단체에 대한
제재법령을 적극 해석하여 테러 관련자로 지정('25.12.1일)

※ 국제범죄조직 금융제재 관련 해외 사례

- (미국) 「국제경제비상권한법」(IEEPA)에 근거하여 핵·테러 이외에도 △국제범죄조직,
△마약조직, △부패·인권 관련 제재 제도 운영

* 행정명령 13581 및 13863에 근거하여 국제범죄조직에 대해 금융제재를 할 수
있으며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에 대해서도 '25.10월 제재대상으로 지정

- (영국) 「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」(SAML)에 근거하여 인권·반부패·악성 사이버
활동 등에 대한 금융제재 제도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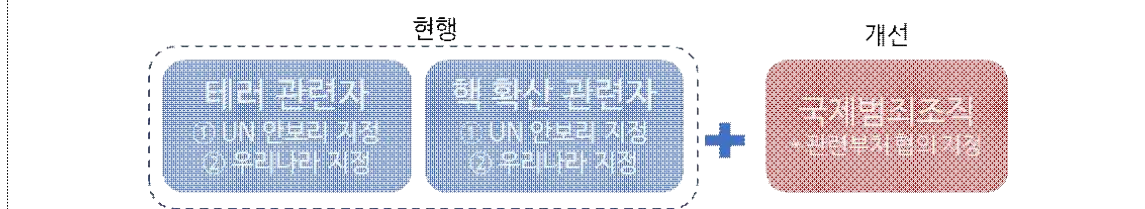
* 「국제인권제재규정」을 근거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관련자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('25.10월)

- (개선방안) 국제 범죄조직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고,
거래를 동결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마련(테러자금금지법령 개정)

-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 범죄대응 관련부처와
협의 등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

* (현행) 테러·핵확산 관련자 지정 가능 → (개선) 국제 범죄조직도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

<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근거 확대(안)>



(3) 심사분석 기능 강화

□ (현황) FIU는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에 대해 심사·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

○ 신기술 발전 등으로 자금세탁의 속도·복잡성이 증대되고 있으나, 현안 범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할 인력·시스템에 한계

*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, 초국가 자금세탁 범죄 등 신유형 범죄 증가

□ (개선방안) 전략분석* 활성화, 심사분석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세탁 양상에 대한 분석역량 및 법집행기관 지원 강화

* STR의 흐름, 사회적 이슈 및 범죄발생 동향 등을 고려하여 테마를 선정하고, FIU 시스템에 축적된 테마 관련 STR을 집중 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

< 최근 전략분석 사례('23.12 ~ '24.1) : 불법자금용 대상 >

- **테마** : 미등록대부업자의 소득신고 누락, 명의 위장을 통한 불법재산 은닉 등 조세범죄 분석
- **방법** : 주요분야(대부업, 대출, 카드깡 등)별 맞춤형 알고리즘을 통해 불법자금용 관련 STR 내역 추출 및 대부업 업종 단기간 거액 현금거래 CTR 내역 추출 ⇒ 선별된 혐의대상자 등 상세분석
- **결과** : 분석보고서 97건 국세청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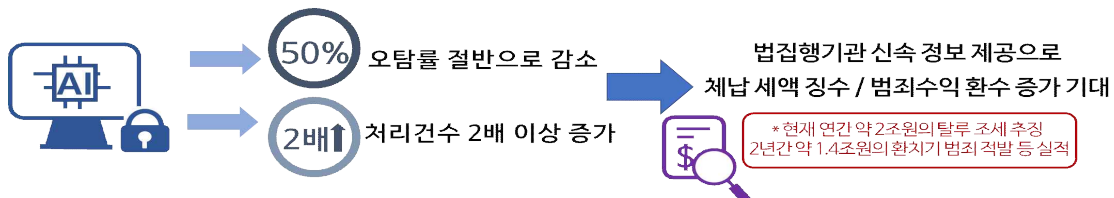
○ FIU 제공정보의 수사기관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* 현안 범죄에 대응한 전략분석팀을 상시화**하고 주기적으로 테마 점검

* 전략분석팀에 검·경 전문 수사관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여 수사기관과의 연계성 제고

** 현재 마약·스캠·불법온라인도박 등 초국가범죄 관련 전략분석팀 구성·운영 중('25.11월~) (「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」의 일제보고(은행·가상자산업계) 및 축적된 STR 활용)

○ 심사분석시스템 AI 도입('26년 ISP), 체이널리시스(가상자산 분석도구) 도입 등 심사분석 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신속 분석·정보 제공

■ 심사분석시스템 AI 도입시 기대효과



○ 유형별 범죄에 대한 심사분석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* 강화

* 심사분석 기법·가상자산 자금세탁 등 최신 동향 관련 전문가(체이널리시스 조사관 등) 교육 실시

[4] 국제공조 강화

- (현황) 국제자금세탁방지 대표 기구인 FATF·Egmont 논의 참여 및 해외 FIU와의 정보공유 MOU 체결* 등 양자·다자간 공조 시행 중

- ▶ (FATF) 美·英·日 등 40개 회원국을 포함 FATF 기준을 이행하는 지역기구 9개 등 총 약 200개국과 ML-TF-PF 대응을 위한 기준 정립 및 기준 이행 등 논의
- ▶ (EGMONT) 전 세계 금융정보분석기구(FIU) 간 정보교류 등 AML/CFT 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 협의체로, 현재 182개국 FIU가 회원으로 활동

* (MOU 체결 현황) 26.1월말 현재 72개국 대상 MOU 체결('25.12.15. 오만 등)

- 캄보디아 스캠 사건 등 초국가범죄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간 대화, 의심거래정보 교환 등 적극적인 국제공조 필요

- (개선방안) 관련국(중국·싱가포르 및 메콩 5개국^{캄보디아·베트남·라오스·태국·미얀마})과의 단계별 협력체계 마련 및 국제 논의 적극 참여

* ①초국가범죄 대응 공조 요청 서신 발송→②실무급 논의→③FIU 원장단 양자/다자 면담

- ① (역내협력 강화) 한국인 대상 조직범죄 거점 당국과의 신속한 협력을 위해 실무급 핫라인 구축* 및 고위급 대화 추진

* (추진현황) 싱가포르·캄보디아·베트남 3개국과 심사분석 담당 책임자(심사 분석실장) 간 양자 화상회의('25.12월말)

- 초국가·가상자산 범죄 정보교환 활성화, 공동조사 등 장기적인 협업을 위해 각 국 FIU 연락관 지정 및 정기 회의 개최 예정

- ② (국제논의 적극 참여) 초국가적 조직범죄 관련 FATF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, 아태 지역 후발국의 역량 강화를 주도적으로 지원*

* 한국 소재 FATF 교육기구(TRAIN) 활용 방안 검토

- FATF 장관급 회의('26.4월)에서 국제협력 강화 등 고위급 선언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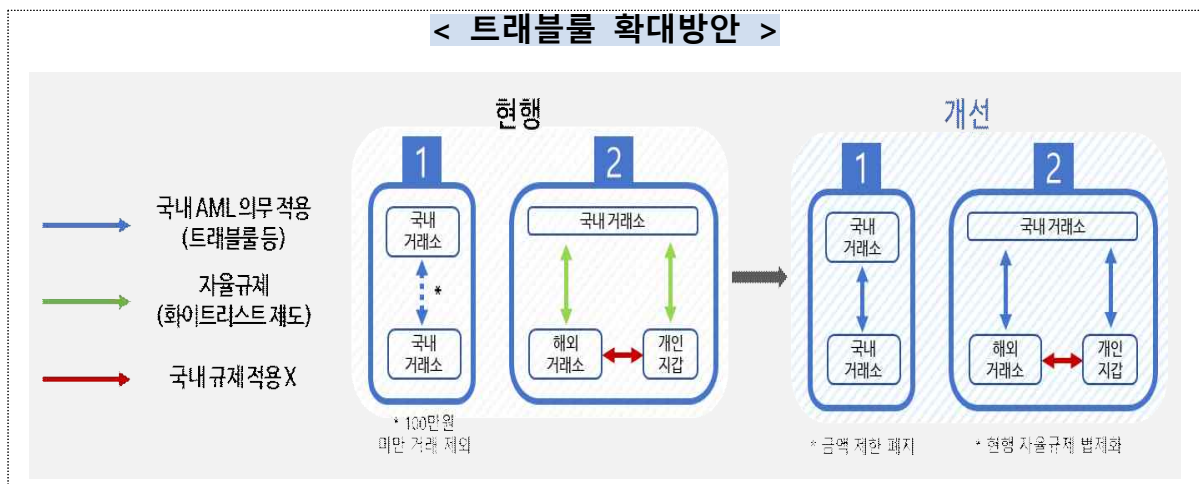
<FATF 주요 프로젝트(예시)>

- ▶ (사이버사기 관련) AI·딥페이크 등 신기술 관련 사이버사기 현황을 점검하고, 사이버사기 수익의 자금세탁 연결고리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
- ▶ (SNS 테러자금 조달 관련) 전통 금융이 아닌 디지털 플랫폼 기반 자금 모집·전달 방식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위험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

2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

(1) 가상자산 정보제공의무(트래블룰) 확대 등 거래 모니터링 강화

- (현황) 국내거래소간 중개하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거래에 대해 송신거래소는 수신거래소에 송·수신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
 - 향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,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 등 가상자산 거래가 다양해질 것이므로 거래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필요
- (개선방안) 가상자산 거래 흐름 파악을 위한 의무 부과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고, 사각지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추진
 - (국내거래소간)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확대*하고, 수신거래소에도 정보확보 관련 의무(예 : 정보요청, 거래거절)를 부과
 - * (현행)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 → (개선)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
 - (국내-해외거래소·개인지갑)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*(송·수신인 동일시에만 허용)하고, STR 의무 강화 등 추가 의무 부과**
 - * (예) ①저위험 해외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이전거래는 허용, ②그 외 해외거래소 및 개인지갑은 송·수신인 동일시 허용하고 ③고위험의 경우 거래금지
 - ** 해외거래소·개인지갑과의 거래는 위험거래로 간주하고 적절한 위험경감조치(거래금액 제한, 추가 EDD 등) 실시, 고액 거래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STR 의무 부과 등



※ 국내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해외거래소·개인지갑 간 거래는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, 법집행기관과의 적극 협력을 통해 적발 등 강화

[2] 스테이블코인 관련 AML 제도 정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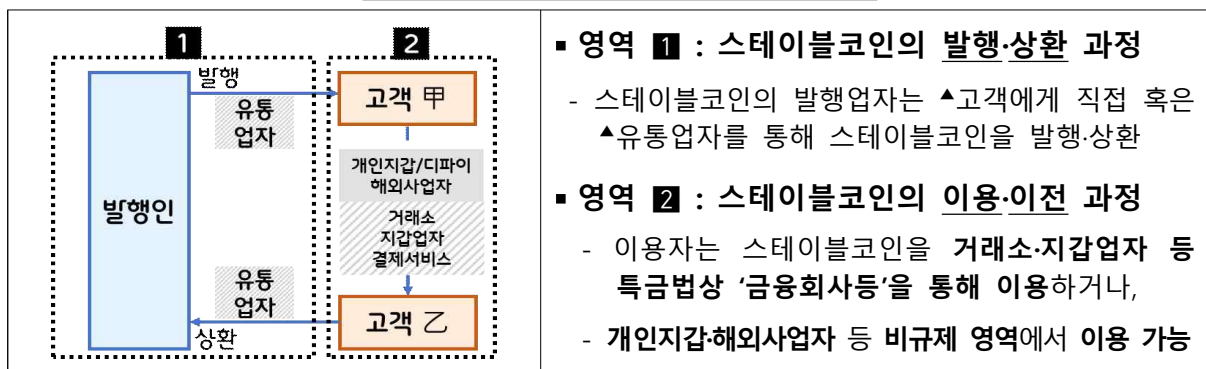
- (현황)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율은 없으며,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일반 가상자산과 같이 거래 중
 -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시 타 가상자산과 다른 AML 리스크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AML 체계의 정비·구축 필요

※ FATF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및 자금이전 수단으로서의 대중화 가능성이 높아 다른 가상자산보다 그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(FATF 가상자산 가이드스)

- (개선방안) 스테이블코인의 발행·유통 등 순환과정에서 기존 AML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 AML 체계를 구축

※ 가상자산 AML 체계 개선을 위한 특금법 정비 연구용역 추진(금융연, '25.9.~12.)

※ 스테이블코인의 순환 과정



-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*에게 고객확인·의심거래보고·내부통제 등 특금법상 '금융회사등'에 부과하고 있는 기본적 AML 의무를 부과

* 유통업자의 경우 기존 AML의무 부과 대상자인 '금융회사등'에 포섭될 예정

- 개인지갑·해외 사업자와의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하여 EDD 등 위험기반접근(Risk-Based Approach)에 따른 대응조치 의무 부과

※ 모니터링 사각지대인 해외사업자·개인지갑과의 거래는 자금세탁 주요 활용경로가 되기에 시급한 보완 필요 → 가상자산 트래블룰 확대(시행령 개정)로 우선 추진할 계획

- 발행 시 동결·소각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재하도록 의무화하여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 활용시 동결할 수 있는 기반 구축

※ 「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」 도입 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FIU의 동결 권한 마련

[3] 가상자산사업자 경영개선 유도 및 특금법령 위반시 엄정 제재

□ (현황) 대다수 가상자산사업자(코인마켓, 보관업자 등)는 영업적자 지속 등으로 자금세탁방지 기초역량이 우려되는 상황

- 5개 원화마켓사업자도 현장검사('24~'25) 결과 최대 몇백만건의 특금법 위반이 발견되는 등 규모에 비해 AML 역량이 미흡

※ 5개 원화마켓사업자 현장검사 후속조치 현황

* 주로 부적정한 고객확인, 미신고사업자와의 거래 등에서 법령 위반

- ▶ 두나무에 대해서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('25.2월), 과태료 352억원 처분 결정('25.11월), 코빗은 과태료 27억원 처분 결정('25.12월)
- ▶ 3개 사업자(코인원, 스트리미, 빗썸)에 대해서는 검사 후속조치 진행 중

□ (향후계획) ①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점검 및 경영개선을 유도하고, ②특금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 추진

① 검사·점검 이력 등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중심으로 특금법령 이행수준을 실사('26년중 5~7개사 현장점검 추진)하고,

- 부실 사업자에 대해 자본잠식 해소방안 등 재무개선 계획을 점검
- 향후 재무상태 심사 근거를 도입하는 특금법 개정안('26.1.본회의 통과) 시행시 부실 사업자의 신규 진입·유효기간 갱신을 제한할 계획

<특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(신고 불수리 사유 추가)>

현행	개선
① <신 설>	⇒ ①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(대표자, 임원, 대주주 포함) 미충족
② <신 설>	⇒ ②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·인력,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미마련
③ <신 설>	⇒ ③ 신고서 거짓, 부실 기재
④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원·대표자의 최근 5년내 금융관련법령 위반(벌금형 이상) 이력 有	⇒ ④ 불수리사유 대상 위반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대상을 임원 대표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

② 가상자산 거래의 높은 자금세탁 위험성을 고려,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재조치 → '26.上까지 검사 후속조치 마무리

-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및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징구, 확인하여 위법·부당사항 재발을 철저히 차단

3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

[1] 금융회사등의 AML 책무구조 정비

□ (현황)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 지정 및 업무지침 작성·운용 의무를 부과중이나, AML 관련 실질적 책임성 확보에 한계

① 특금법상 보고책임자가 일부 은행 등을 제외하고는 임원이 아니며*, 이에 따라 의무 미이행시 제재 대상은 주로 실무자

* 상호저축은행, 보험회사, 카지노사업자,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준법감시인 차하위 직위 또는 AML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정 직위 이상으로 규정

② AML 업무지침 작성·운용에 대한 규정이 산재*되어 있으며, 위반 시 제재규정이 미흡한 측면**

* 감독규정, 업무규정에 업무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이 나뉘어서 규율되어 있으며, 일부 사항은 업무지침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

** (예) 특금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 의무 관련 업무지침 작성·운용 의무 위반 시 제5조 위반과 달리 기관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음

□ (개선방안) '금융회사등'의 AML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특금법상 AML 부문에 대한 임원 책무 강화 및 업무지침 규정 정비 추진

① (임원 책무 강화) 특금법상 보고책임자를 임원(준법감시인 포함)으로 규정하여 임원이 직접 AML 관련 사항을 관리하도록 책무 강화*

* 보고책임자의 책무 및 위반시 제재 관련 사항을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

② (업무지침 규정 정비) '금융회사등'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산재된 규정을 통합 규율하고, 위반 시 제재규정을 명확화

- 업무지침에 포함할 사항*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하여 제재부담이 실무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정비

*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 위험도 평가, 고객확인 및 의심거래보고 관련 사항 등

[2] AML 제도이행평가 법제화

□ (현황) FIU는 금융회사 등의 적극적인 AML 제도이행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 2회 「AML 제도이행평가」를 실시중

- 다만, 평가가 자율참여*로 이루어져 불참기관이 일부 존재** 하며, '금융회사등'이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 담보에도 한계

* 업무규정(§18)상 "FIU 원장이 AML 제도이행평가를 실시해야 한다"고 규정

** AML 제도이행평가 대상기관 5,573개 기관 중 675개 기관(12%) 불참

□ (개선방안) 「AML 제도이행평가」 참여를 의무화*하고, 허위 자료 입력, 자료제출 거부 등의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

* 거래유형, 자산규모 등 감안시 자금세탁 위험성이 낮거나, 평가참여 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회사 등에 대한 평가부담 완화방안 별도검토('26년 연구용역 예정)

※ (참고) 他법의 평가제도 법제화 사례

①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(금융소비자법), ②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 실태평가(금융복합기업집단법), ③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(개인정보보호법)

[3] AML 검사·제재 개선

□ (현황) AML 검사가 다양한 기관에 위탁*됨에 따라 업권별 검사·제재 수준이 상이하고, 대부분 낮은 수준의 제재**로 실효성 저하 우려

* (금감원) 은행 보험 등 (과기부) 체신관서 (행안부) 새마을금고중앙회 (관세청) 환전영업자, (중기부) 벤처조합 등, (제주도청) 제주 소재 카지노, (상호금융중앙회) 단위조합 등

** 78.3%가 현지조치로 종결되고, 문책·주의사항은 11.2%에 불과('25년 기준)

□ (개선방안)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회사 등*을 대상으로 검사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, 전문검사 확대 등 AML 검사 강화**

* 자금세탁 위험성, AML 제도이행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검사계획을 수립

** FIU 직권 검사지원근거 마련 여부 등 「특금법 개정 TF」를 통해 논의·검토

- 검사매뉴얼 개정, AML 제재 사례집 마련, 검사원 교육 등을 통해 AML 검사를 표준화하고, 제재 수준 일원화 유도

- 위험기반 감독 내실화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엄정히 제재 하고,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동의명령제도* 도입 검토

* 위반 관련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을시 해당자가 시정·개선, 재발방지 조치 등에 동의하면 제재절차를 종결하거나 제재 같음 시정조치 명령 → 시정조치 미이행시 가중 제재

4 글로벌 정합성 개선

(1) 법인 실소유자 정보 확인 · 검증 · 활용체계 구축

- (현황) '금융회사등'은 법인고객에 대한 실제소유자*(Beneficial Ownership) 확인 의무에 따라 고객확인시 개별적으로 확인 필요

* 법인을 최종적으로 소유·지배하는 자연인(특금법 10조의5)

- 개정된 FATF 권고사항(24)은 당국이 법인의 실제소유자 등록부(Registry) 등의 정보관리 체계를 도입할 것을 권고

- (개선방안) 법인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FIU 등 정부가 관리·활용하여 유령·위장법인, 법인 대포통장 등을 통한 자금세탁 차단

- STR 보고 정보 등을 활용하여* '금융회사등'이 보유한 법인의 실제소유자 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(DB) 구축을 검토

* 우선적으로 STR 보고 건에 대하여 법인 실제소유자 정보를 확보하고(단기), 향후 정보 확보 범위를 STR 보고 건 이외에 대하여도 확대(중장기)

- 향후 법인 본인, AML 의무자('금융회사등'), 법집행기관 등*이 해당 DB를 열람하고 교차검증할 수 있도록 중장기 확대

* 법인 실제소유자 검증에 필요한 법집행기관 보유 정보도 FIU가 공유받아 활용하고, 실제소유자 검증 결과 및 정보를 해당 기관에 다시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

※ FATF 국제기준에 따른 실제소유자 등록부의 대체·보완 수단으로 DB 구축을 우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등록부 도입 추진

<법인 실제소유자 정보 관리체계 도입안>



[2] 특정비금융사업자(변호사·회계사·세무사 등)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

- (현황) 우리나라는 특정비금융사업자 중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서만 자금세탁방지(AML) 의무를 도입('07년)하여 운영 중

※ FATF 회원국 중 특정비금융사업자 대상의 AML 의무 미도입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개국 (회원국 평균 이행 점수 74%와 대비해 한국의 평가점수는 5%)

- FATF는 변호사·회계사·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가 금융거래 중개* 등 특정 업무 수행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

* ①부동산의 매매, ②고객 자금·자산 관리, ③고객 계좌 관리, ④회사 설립·운영을 위한 출자금 조직, ⑤법인·신탁의 설립·운영·관리 및 사업체 매매 관련 업무

- (개선방안) FATF 상호평가 대비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해 특정 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방안 마련

- FATF의 핵심 권고(고객확인, 의심거래보고의무)는 최대한 도입하되, 구체적인 방안은 관련 직역과 협의하여 특금법 개정안 등 마련

[3] 상호평가 대비 정부합동대응단 구성·운영

- (현황) FATF는 회원국들의 기준 이행 효과성 제고를 목표로 제5차 라운드 평가를 개시('24.8월~)하였으며, 한국은 '28.3월부터 수검 예정

- 범부처 국가위협평가를 토대로 AML/CFT(테러자금조달방지) 정책을 재정립하고,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호평가 대응체계 마련 필요

- (개선방안) 범부처 정부합동대응단을 구성하여 법·제도개선 이행방안 등을 구체화하고, 상호평가 사전 모의평가 실시

- 정부합동 대응단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, 국가 AML/CFT 정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* 또는 국무회의 보고 추진

*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부처(재경부, 외교부, 법무부 등) 위원회로서, 대테러활동 정책 등 관련 중요사항 심의·의결(테러방지법§5)

III. 향후 계획

□ 국제공조 등 법령정비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

○ 법률 개정과제는 상반기 중 개정안 마련하여 국회 제출 추진

○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 내 속도감 있게 추진

<세부 추진 일정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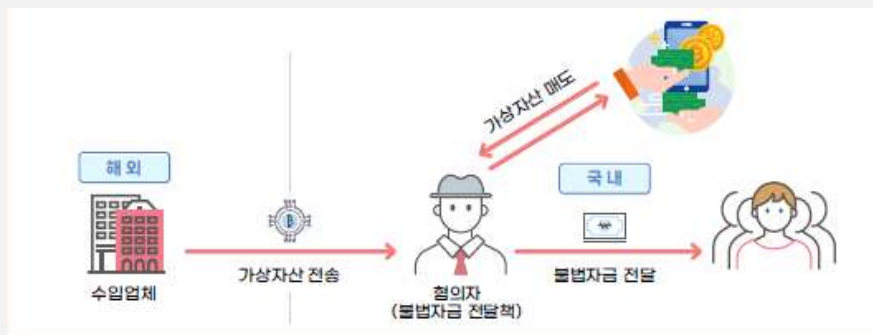
추진과제	추진내용	일정
1. 중대 민생범죄 및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		
(1)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	· 제도 도입안 발표 및 법안 제출	'26.상
(2) 국제 범죄조직 자금동결 근거마련	· 개선방안 구체화	'26.상
(3) 심사분석 기능 강화	· 초국가범죄 등 전략분석 실시	지속
(4) 국제공조 강화	· 역내국 협력채널 다각화 및 실무논의	지속
	· FIU 원장급 양자/다자 면담 추진	'26.상
	· FATF 초국가범죄 프로젝트 참여	~'26.상
	· FATF 장관급 회의	'26.4월
2.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		
(1) 가상자산 모니터링 강화	· 트래블룰 강화	'26.상
	· 해외거래소·P2P거래 관련 협력 강화	'26.상
(2) 스테이블코인 관련 AML 제도정비	· 연구용역 추진 및 법안 마련	~'26.상
(3) 가상자산사업자 경영개선업정 제재	· 자금세탁방지 관련 현장점검	지속
	· 재무개선 계획 확인	지속
	· 5대 원화마켓사업자 후속조치 마무리	'26.상
3.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		
(1) 금융회사등의 AML 책무구조 정비	· 개선방안 구체화	'26.상
(2) AML 제도이행평가 법제화	· 연구용역 추진 및 법안 마련	'26.2~6월
(3) AML 검사제재 개선	· AML 검사매뉴얼 및 제재 사례집 마련	'26.하
4. 글로벌 정합성 개선		
(1) 법인 실소유자 정보체계 구축	· 법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	~'26.하
(2) 특정비금융사업자 AML의무 도입	· 법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	~'26.하
(3) 상호평가 합동대응단 구성	· 관계부처 협의 및 대응단 구성	~'26.상

1. 조세포탈 사례

- 해외의 수입 업체들이 혐의자(전달책)*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하고, 혐의자는 이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도하여 매도자금을 다시 국내의 중고품·의약품 수출 업체 관련 개인·법인에게 송금하는 거래 패턴을 반복

* 국내 소재 도매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 개인

- 이체받은 업체들을 확인하여 이들의 수출실적과 외환영수차액을 비교해 본 결과, 이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매출 누락에 따른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법집행기관에 관련 자료 제공



2. 마약류 범죄 사례

- 비트코인으로 필로폰 판매대금을 수수하고 믹싱* 업체로 보내 세탁한 후, 믹싱 업체로부터 다시 비트코인을 받아 환전하는 방식으로 마약 판매 대금을 자금세탁
- * 여러 이용자들의 자금을 혼합하여 출처와 소유권을 은폐하여 거래 추적을 방해하는 기술
- 불법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마약 구매자들이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(16%~20%)를 받고 비트코인을 지정된 지갑에 보내주는 방식으로 마약 구매 대금의 은닉·세탁을 도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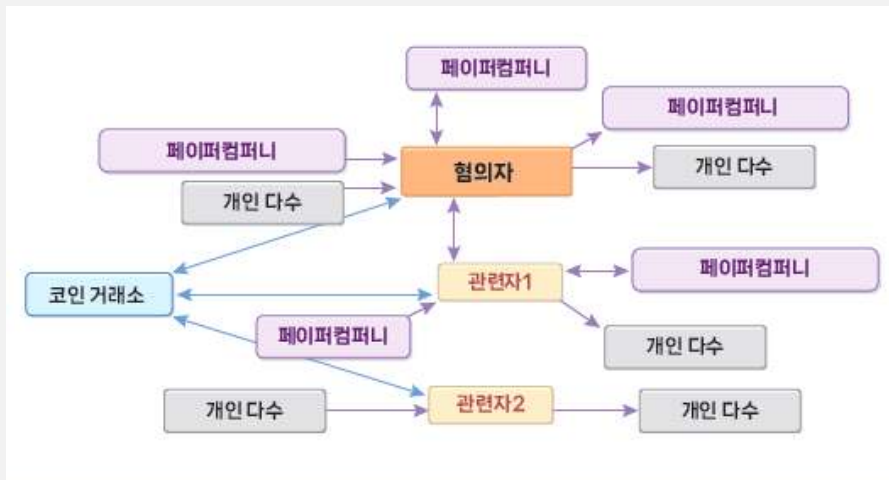
3. 도박 범죄 사례

- 혐의자는 내국인들의 자금을 받아 가상자산거래소 또는 은행계좌를 거쳐 해외 A국에서 체크카드 결제를 통해 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내국인들의 해외 원정 도박을 도운 것으로 의심
- 불법 도박 관련 자금세탁 혐의로 법집행기관에 정보 제공
- 혐의자의 출입국 내역상 최근 5년간 특정 국가로 수십차례 출국한 기록이 있고, 거래 상대방이 해당 국가 소재 호텔로 카지노를 운영 중인 것을 확인

4. 기타 사례

< ※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례 >

- 혐의자는 전형적인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이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로서, 다수의 개인(투자사기 피해자들)으로부터 고액의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고,
 -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외부에서 고액의 가상자산을 입고 받고 이를 거래소에서 매도하여 현금 출금하는 거래 방식을 통해 투자 사기 금액을 세탁
- * 혐의자의 근무 사업장 확인 결과 해당 건물이 공실로 확인되고, 주요 입출금처가 사기·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하였음



< ※ 면세점 구매 대행을 통한 불법 환치기 사례 >

- 혐의자는 해외의 구매 대행 업체로부터 면세점 물품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송금 받고, 이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, 여러 계좌로 이체하여 계좌이체, 현금, 수표, 상품권 등의 방법으로 면세점에 대금을 지급
- 혐의자는 약 수천억원 상당의 해외 물품구매 대금에 대한 영수업무를 대행하여 무등록외국환업자로 확인

